

LINC 3.0 사업단 운영규정

제 정	2022. 10.
개 정	2023. 10.
개 정	2024.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설치한 LINC 3.0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의 추진과 사업비 집행·관리 등 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LINC 3.0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3.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및 운영
4. 산학연 협력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5. 취·창업 역량강화 및 관리시스템 운영
6. 특화분야 산학협력 브랜드 창출
7.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 창출
8. 산학연 협력 가치창출
9. 기업연계 기반 공유·협업 활동
10.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1. LINC 3.0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성 및 운영
12. LINC 3.0 예산 편성 및 집행
13.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제2장 편제

제4조(기구) ① 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두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산학협력부단장, 사업부단장, 취업지원센터장, 창업자원종합관리센터장, 지역상생협력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산학연총괄기업지원센터장, 공용장비지원센터장을 둔다.(개정 2023.10.25)
2. 산학연총괄기업지원센터에는 Smart Rail ICC, Smart Technology ICC, Smart Service Industry ICC, 기술이전센터(TLO)를 둔다.(개정 2023.10.25)
3. 사업단장은 제3호에 정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단 내 별도의

조직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사업수행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팀장과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원,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③ 사업단 산학연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각 영역의 산학협력 자원 및 생산물 등을 관리·운영하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단장)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을 총괄한다.

제6조(사업부단장) 사업부단장은 본 규정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단장을 보좌하며, 취업지원센터, 창업자원종합관리센터, 지역상생협력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연총괄기업지원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10.25)

제7조(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취업을 제고 및 관리, 학생경력개발 및 운영 등 취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창업자원종합관리센터) 창업자원종합관리센터는 창업교육지원,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 산학연계 창업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창업컨설팅 및 글로벌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지원 및 연구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관장한다. 창업자원종합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역상생협력센터) 지역상생협력센터는 지역의 산업체·연구기관·공공기관·특수목적기관·인근 대학 등과의 교육·연구·봉사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활동에 관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공용장비지원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는 공용장비 지원체계 구축,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산학연총괄기업지원센터) 산학연총괄기업지원센터는 산학협력 및 LINC 3.0 사업 관련 기획 총괄 및 지원, ICC 운영,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LINC 3.0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13조(위원회) ① 사업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LINC 3.0 기획위원회
2. LINC 3.0 운영위원회
3. LINC 3.0 자체평가위원회
4. 산학협력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② 사업단장은 제3조에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산학연총괄기업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

당자가 된다.

제14조 (LINC 3.0 기획위원회) ① 사업단 연간 계획 수립·검토 등을 위해 LINC 3.0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내위원으로 부총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01.18.)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에 정한 위원 외 보직교원, 유관기관, 가족기업, 학생대표로 중 5인 이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4.01.18.)

⑤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⑥ LINC 3.0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 운영에 관한 학교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참여 전임교원 성과(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4. 참여학과(부, 전공)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 (LINC 3.0 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 및 점검, 모니터링을 위해 LINC 3.0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LINC 3.0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사업부단장, 산학협력실장, 취업지원센터장, 창업지원종합관리센터장, 현장실습센터장, 지역상생협력센터장, 공용장비지원센터장, 산학연총괄기업지원센터장, Smart Rail ICC센터장, Smart Technology ICC센터장, Smart Service Industry ICC센터장, 기술이전센터장(TLO), 사업관리팀장, 연구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25)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에 정한 위원 외 교내 또는 교외위원 중 5인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정한 위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⑥ LINC 3.0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수립
2. 사업단 사업 예산 배정 및 변경
3. 사업단 관련 프로그램 집행 및 관리
4. 사업성과 분석·평가 및 모니터링
5. 참여학과(부, 전공)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과 사업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LINC 3.0 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의 성과지표 관리를 위해 LINC 3.0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교내위원으로 부총장, 단과대학장, 대학혁신실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01.18.)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에 정한 위원 외 보직교원, 유관기관, 가족기업, 학생대표 중 5인 이내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4.01.18.)

⑤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⑥ LINC 3.0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성과지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의 진단·평가, 개선방향 및 환류에 관한 사항
3. 참여학과(부, 전공)의 사업성과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 (산학협력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신산업 기반 교육과정 구축을 위해 산학협력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업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사업부단장, 산학협력실장, 취업지원센터장, 창업지원종합관리센터장, 현장실습센터장, 지역상생협력센터장, 공용장비지원센터장, 산학연총괄기업지원센터장, Smart Rail ICC센터장, Smart Technology ICC센터장, Smart Service Industry ICC센터장, 기술이전센터장(TLO)으로 한다.(개정 2023.10.25)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에 정한 위원 외 보직교원 중 5인 이내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정한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⑥ 산학협력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융복합학사제도 개편(가상융합학과/융복합부·복수전공/마이크로디그리제, 모듈형 학기제, 집중이수제 운영 표준 규정 제정)
2. 일반/학제간융합형/기업연계기반형/글로벌 캡스톤디자인 운영 제도 및 캡스톤디자인(실감형/리빙랩형) 교수법 개발
3. 기타 신산업 기반 교육과정 구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8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대학 대응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9조(회계 및 정산) 사업단의 수입·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 계상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관련 제반사항은 사업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지침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5장 기타

제20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 외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LINC 3.0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관기관의 운영규정과 대학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18.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